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서민우 의원 등 7명
- 발의일자: 2022. 11. 04.(금)
- 회부일자: 2022. 11. 04.(금)
- 검토기간: 2022. 11. 07.(월) ~ 11. 11.(금)

## 2. 제정이유

- 일시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주민과 달리 결혼을 통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생애주기적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 다.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 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바. 지원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된 현행 조례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과 결혼을 통해 정착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결혼 등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2020년 11월 현재 달서구 관내 다문화가구원은 7,928명(대구 33,373명, 전국 1,093,228명)에 달하고, 가정을 이루어 국내에 정착하는 이들의 올바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살펴보면
- 근거법령의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따르고
- 시행주체의 측면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법무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가족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현행 조례에서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은 기획조정실 기획팀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